
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일부인정된죄명사기)·
사기미수·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·배임증재·배임증재미수(변경된죄명
배임증재)·입찰방해·사기

[광주지방법원 2015. 7. 6. 2015고합30, 150(병합)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사】 한지혁, 유진승(기소), 김은정(공판)

【변호인】 변호사 김용출

【주문】

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.

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배임증재의 점은 각 무죄.

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.

【이유】

【이유】

【이유】

【이유】

【이유】

【이유】

【이유】

【이유】

【이유】

【이유】